

# 충청북도시, 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심사보고서

내부위원회  
1995. 3. 24.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5년 3월 16일

. 회부일자 : 1995년 3월 16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12 회 임시회

. 제 1 차 내부위원회 (1995. 3. 24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최 경 주)

가. 제안이유

시, 군통합, 읍, 면, 동의 신설, 분할, 인구수의 증감등에 따라 시군의회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골자

- 선거구 및 정수조정 근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로 함.
- 선거구는 읍면동수의 증가에 따라 158선거구에서 163선거구로 5개선거구를 신설하였으며, 의원정수는 읍면동 신설 증 5명, 인구 2만초과로 변동 증 5명, 총 10명이 증가하였고, 반면 인구가 2만이하로 감소되어

3명이 줄어 총정수는 173명에서 180명으로 7명이 순 증가함.

### ※ 증감사유

. 읍면동신설(증5) : 청주시 북대1, 북대2, 봉명2, 송정, 수곡동,

단양군 단성면

. 인구2만초과(증5) : 청주시 율량, 사천, 금천, 용암, 용정, 방서동,

충주시 연수동, 제천시 청전동

. 인구2만이하(△3) : 청주시 내덕1, 사직2동, 보은군 보은읍

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 전문위원 우 병 수 )

충청북도 시·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이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조 및 23조에 의거하여 동별 1인 원칙과 인구2만초과시 1인을 추가하도록 되었는바 오는 6월에 실시될

4대 지방선거로부터 자치구시, 군의회의원정수가 현 173명에서 7명이 증가  
180명으로 조정되며 선거구 또한 읍면동 수의 증가에 따라 158선거구에  
서 5개선거구가 증가한 163선거구로 조정되는바 이와관련하여 현행 조례  
조문의 적용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 
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론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사결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 7인, 찬성 7인)

7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시, 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- 신구조문 대비표